

성주군 인구정책 조례

[시행 2022.12.31]
(일부개정) 2022.12.08 조례 제246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미래지역활력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4-930-6032

제5조(인구정책 사업)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과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이에 필요한 조사·연구·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.

1. 결혼·출생·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사업
2.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
3.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·문화 및 복지사업
4. 교육·주택·교통·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
5. 군민의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확대 사업
6.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
7. 인구 시책 사업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을 정하여 기업·법인·단체·개인 등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이 많은 민간인, 기관·기업 등에게 「성주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 <조례 제2219호, 2017.12.1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각각 이 조례 시행 이후 군에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조례 제2250호, 2018.11.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2296호, 2019.6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각각 이 조례 시행 이후 군에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조례 제2356호, 2020. 12. 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. 1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중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은 2019. 7. 1.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 칙 <조례 제2404호, 2021. 12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22. 12. 8. 조례 제246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
「성주군 인구정책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업무 담당”을 “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부터 (77)까지 생략

제3조 생략